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2
----------	-----

제출년월일 : 2015. 9. 30.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 비용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규정(안 제1조~안 제3조)
- 나.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안 제5조)
- 다. 도시재생 관련 시책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안 제6조)
- 라. 위원회의 제척 및 해촉 근거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 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장 위촉 근거 규정(안 제10조)
- 바.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 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16조)
- 아. 공모사업 및 대학의 지역연구 협력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안 제17조~안 제18조)
- 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39조
- 「지방재정법」 제 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다. 기 타

- 1) 비용추계서 : 별첨
- 2) 입법예고(2015. 9. 2. ~ 2015.9.2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 없음
- 4) 위원회의 구성·운영 : 원안 동의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6)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생활기반자”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직장, 사업장, 학교 등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두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기타 보안·방범시설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4조(권리) 서대문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영 제15조 각 호의 업무 및 이 조례 제11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위탁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활센터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3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1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

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14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17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주민 또는 생활기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관내 대학 지역연구 협력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지원금액의 환수) 도시재생사업 지원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용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용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용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 + \text{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text{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추진
- 2019년부터는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에 따라 공동체재생 분야 중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만 발생 예상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예산 10,500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시비 9,450백만원(90%), 구비 1,050백만원(10%) 소요
- 2019년에는 공동체재생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60백만원 책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5)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5차년도 (2019)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500,000					500,000
	청년문화 재생	1,100,000	1,534,000	250,000	250,000		3,134,000
	신촌경제 재생		510,000	1,300,000	540,000		2,350,000
	신촌하우스 재생		550,000	550,000	466,000		1,566,000
	공동체 재생		690,000	360,000	360,000	60,000	1,470,000
	공공기반시설 재생		480,000	360,000	700,000		1,540,000
	소계(b)	1,600,000	3,764,000	2,866,000	2,270,000	60,000	10,560,000
□ 총 비용(a-b)		1,600,000	3,764,000	2,866,000	2,270,000	60,000	10,56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5)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5차년도 (2019)	합계
시비	1,450,000	3,388,000	2,579,000	2,033,000		9,450,000
구비	150,000	376,000	287,000	237,000	60,000	1,110,000
합계	1,600,000	3,764,000	2,866,000	2,270,000	60,000	10,560,000

5. 덧붙이는 의견

- 2016.3월까지 신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추진중으로써 공청회를 통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후 고시

6. 작성자

- 지역활성화과 이은주(☎330-1506)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16.3월까지 신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추진중으로서 상세내역 미확정

관계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89호, 2015.1.6., 타법개정]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중략).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략)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 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